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9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4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선교·김형동

임이자 · 서범수 · 김예지

조경태 · 서일준 · 김대식

이인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.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자연인만 할 수 있는 행위로, 이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자연인이자 사업주인 개인사업주로 한정되며, 사업장 내의 지위 등이 개인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음.

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12조, 제13조 및 제39조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사업주·상급자"를 "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, 상급자"로 한다.

제12조 중 "사업주"를 "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"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사업주 및"을 "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, 상급자 또는"으로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"사업주"를 "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직장 내 성희롱"이란 <u>사업주</u>	2 <u>사업주,</u>
<u>· 상급자</u> 또는 근로자가 직장	법인의 대표자, 상급자
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	
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	
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	
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	
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	
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	
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	
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	
한다.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	제12조(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)
<u>사업주</u> 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	<u>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</u>
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	
니 된다.	
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	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사업주 및</u> 근로자는 제1항에	② 사업주, 법인의 대표자, 상급
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	<u>자 또는</u>
야 하다	